소비자법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저자 및 윤리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기술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방법,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중복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의 준수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인용 표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저자는 소비자법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법연구 원고작성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그 저자 또는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제5조의2(연구윤리서약 등) ① 저자는 투고 논문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해야 하며 투고 시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연구윤리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신고가 된 논문(이하 ‘신고 논문’이라고 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신고 논문에 대한 조사,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신고 논문의 저자 또는 신고자는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은 회피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연구윤리교육)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연구윤리교육은 대면방식 또는 온라인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신고) 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소비자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3인의 연구윤리위원을 정하여 신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다.

② 전항의 연구윤리위원은 조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서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신고된 논문의 저자에게 제8조의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개최)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제9조 제2항의 조사결과서가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조사결과서와 같은 조 제3항의 의견서 또는 해명을 바탕으로 신고된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된 논문의 저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협조) 신고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비밀 유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신고자와 신고된 논문 저자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된 논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신고 논문 및 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1. 게재전인 신고된 논문은 심사 중단 또는 게재 불가

2. 게재된 신고된 논문은 소급하여 게재 무효

3. 향후 5년간 소비자법연구 투고 금지

4. 향후 5년간 소비자법연구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 금지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의 제재 내용을 신고된 논문의 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제재를 한 경우, 한국소비자법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문을 삭제한다. 다만, 신고 논문의 저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예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 신청) ① 신고된 논문의 저자는 제1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신고된 논문 저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13조 제1항의 제재를 철회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하며,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도 통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